

과학데이터 리포지터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권리와 조건

김태중* · 이상환** · 신진섭***

I. 서론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곳¹⁾을 말하나 디지털 시대에서 콘텐츠를 저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리포지터리는 데이터 관리, 탐색, 접속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장하는 곳이다. 리포지터리는 학술 교류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dCollection, DSpace@MT, arXiv, PMC 등이 운영되고 있다.²⁾ 과학데이터 분야에서는 NASA의 데이터, 저널 게재된 논문의 데이터 리포지터리인 Dryad 등 다양한 형태의 리포지터리와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다. 과학데이터 리포지터리의 학문 분야별 정리된 리스트와 이에 대한 링크는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

여기서는 과학데이터 리포지터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과학데이터에 따른 권리와 리포지터리 구축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리포지터리 운영에 있어서 수록되는 데이터 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당사자(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서 초안을 소개한다. 리포지터리에 있어서 당사자간 계약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제공자간 관련 업무와 절차를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만하다. 이 표준계약서는 포털, 음악, 영상, 이더닝, 모바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자로 간주되는 중소 또는 영세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⁴⁾ 과학데이터 리포지터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영국의 DISC-UK에서 발행한 보고서⁵⁾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과학데이터의 성격과 권리

1) 과학데이터 정의 및 특성

1953년 Fermi Enrico 등이 ‘컴퓨터 실험’이라는 개념을 개발⁶⁾한 이래 과학 기술 분야 연구 개발

* 김태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연구팀 책임연구원, 042-869-1750, taejung@kisti.re.kr

** 이상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연구팀 팀장, 책임연구원 042-869-1715, sanglee@kisti.re.kr

*** 신진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연구팀 선임연구원, 042-869-1754, js.shin@kisti.re.kr

1)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pository>

2) 광승진, 신재민,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4), pp.67-96, 2008

3) http://oad.simmons.edu/oadwiki/Data_repositories

4) http://www.kocca.kr/notice/notice/1302100_3322.html

5) Ann Green, Stuart Macdonald, Robin Rice, Policy-making for Research Data in Repositories: A Guide version 1.2, Data Information Specialists Committee-UK, 2009

6) Committee on the Fundamentals of Computer Scien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s Board,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Computer

의 과정 또는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학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활용 등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과학데이터는 광의적으로 과학 기술 및 의학 데이터와 문헌을 가리키는 경우⁷⁾도 있으며 연구 데이터라고도 한다. 연구 데이터라고 할 때에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연구 개발 활동의 과정 또는 결과로 생산되는 데이터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과학 데이터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관측(observation), 모니터링, 조사(investigation), 실험(experiment), 연구 분석(research analysis), 계산(computation)과 같은 과학 기술 활동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⁸⁾라 할 수 있다.

과학데이터의 가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개선한다는 측면과 최근 빅 데이터의 주된 관심거리인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의 생산성 향상 문제에서는 이미 발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실제 실험 등의 실행을 축소할 수 있어서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실험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차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실험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찾는 일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수년전 중국이 희토류 금속의 수출 통제를 추진할 때 많은 연구 개발자들이 희토류 금속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Geoffroy Hautier 등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과학데이터는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가 관측, 실험 등을 통해서 수집되므로 연구자의 특성, 실험 관측 장비의 성능 등에 의존적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전혀 쓸모없는 데이터이라는 특성이 있다. 과학데이터는 수집할 당시의 측정 장비의 기술적, 정밀 기기의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측정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는 통계적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과학데이터는 자연 현상을 밝히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자연의 절대값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가는 근사값의 집합 또는 평균값 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과학데이터와 권리

학술 연구 부문과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은 주로 특허와 저작권이며 이러한 권리는 창의적인 일과 투자를 보호하고 과학적 발견에 뛰어들도록 격려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한다¹⁰⁾. 과학데이터에 관한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저작권, 계약, 특허, 개인정보보호, 도덕적 권리, 내부 지침, 영업비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리포지터리의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권과 계약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

Science: Reflections on the Field, Reflections from the Field”,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http://www.nap.edu/catalog/11106.html>

7) Strategies for Preservation of and Open Access to Scientific Data in China: Summary of a Workshop, p1, (<http://www.nap.edu/catalog/11710.html>)

8) *ibid*, p8

9) Geoffroy Hautier 등, “Data mined ionic substitutions for the discovery of new compounds”, *Inorganic Chemistry*, 50, pp.656-663, 2011

10) Roger Elliot, “Who owns scientific data?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scientific publication chain”, *Learned Publishing*, 18(2), pp.91-94, 2005

11) Anne Fitzgerald 등, “Practical Data Management: a Legal and Policy Guide”, QUT, 2008

로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²⁾ 중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의도를 좀 더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제1조에 문학, 예술 작품과 더불어 과학 작품 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 대부분 국가의 경우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정보, 사실 등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정보, 사실 등을 표현한 매체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데이터는 보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독일 등 4개국의 연구 데이터에 관한 법적 상태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¹⁵⁾에 의하면 연구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raw data), 지도와 도표, 사진,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호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조건이 따르는 하지만 원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시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교적 창작성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 영국의 경우에 보호될 경우도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된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1996년 채택된 EU의 “The EU Database Directive: 96/9/EC”에 따라 유럽연합의 각국은 15년간 그 재산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포함시켜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데이터는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한 원시 데이터 그자체로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서 권리를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시 데이터라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서비스가 된다면 보호가 가능하다.

리포지터리 운영에 관한 권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계약에 의한 권리라 할 수 있다. 계약은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으로 구별한다. 사법상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법상의 계약 등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며 계약 성립은 대립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청약의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함이 가장 전형적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양 당사자간에 오고감으로 성립하는 교차청약에 의할 수도 있으며,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으나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 성립과정상 당사자가 일방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계약의 성립유무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¹⁶⁾ 과학데이터에 관하여는 비밀 협약, 저작권 허여, 접속 협약, 재정 지원 협약, 기타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관간 협약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다.

3. 리포지터리에서 검토해야할 주요 사항

1) 콘텐츠의 범위

리포지터리에 수록할 콘텐츠에 대해 학문 분야, 언어,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상태, 버전, 데이터 파일 형식, 크기의 제한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주제 분야와 언어에 관하여 어느 주제

12) 저작권법, 법률 제11110호 일부개정 2011. 12. 02.

13) 중국인민공화국저작권법, 2001년 10월 27일 개정

14) Anne Fitzgerald 등, ibid

15) Centre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CIER), “The legal status of research data in the Knowledge Exchange partner countries”, The Netherlands, 2011

16)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1g3436a>

는 포함시키기도 제외할 것인가와 다른 언어로 된 경우 번역해야 할 것인가 등이 문제이다. 데이터 종류는 문자, 숫자, 소리, 비디오 등 다양하며 실험 데이터, 관측 데이터, 화합물 구조와 같은 참고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파생된 데이터 등의 수록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상태는 연구 과정에 따른 것으로 원시데이터, 특정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가공된 데이터, 요약 또는 표로 가공된 데이터, 파생 데이터 등이다. 버전에 관하여는 데이터 셋 이름에 반영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이전 버전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에게는 최신 버전만을 접속하도록 할 것인가 등이다.

데이터 파일 포맷에서 원시 데이터는 잘 보존될 수 있으나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리포지터리가 최신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야하는가 압축 파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다. 크기의 제한은 전체 파일의 크기 또는 파일의 수에 대해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2) 메타 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장기간 적당한 설명과 통제를 위해 적합한 표준을 사용해야하며 관리(administrative), 설명(descriptive), 기술(technical), 구조(structural), 보존(preservation) 등의 메타데이터가 사용된다. 메타데이터에의 접속, 재사용, 종류와 출처, 스키마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해야한다. 접속 문제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속하도록 할 것인지 접속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 등이며, 재이용은 메타데이터를 사전허락 없이 가져가도록 할 것인지 허락한다면 OAI-PMH¹⁷⁾ 지침을 따르도록 할 것인지 등이다.

3) 데이터 등록

등록의 적절성, 리포지터리의 조정, 데이터 품질 요건, 기밀성과 공개 적절성, 엠바고 상태, 권리와 소유관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등록의 적절성은 등록자가 누구인가 콘텐츠는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등록 중 에러 발생시 재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 확인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조정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DOI 부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품질 요건은 책임소재, 품질 평가 등이다.

4) 접속 및 재이용

데이터 개체에 대한 접속, 데이터 개체의 이용과 재이용, 이용자 추적과 이용 통계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접속에 대하여는 Open Access 개념으로 공개할 것인가 접속을 관리할 것인지 접속을 제한하거나 등록제로 강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데이터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데이터는 बै치형식으로 접속하게 할 것인가 가시화 등 응용 시스템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인가 로봇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등이다. 이용자 추적과 이용 통계는 리포지터리 담당자, 위탁자, 데이터 생산자, 리포지터리 이용자, 연구자금 출연자 등 누구까지 공개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7) <http://www.openarchives.org/OAI/openarchivesprotocol.html> The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5) 보존

데이터 보유 기간, 기능 보존 문제, 파일 보존, 고정성과 신뢰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무기한인가 또는 위탁기간으로부터 몇 년까지로 할 것인가 등이며 기능 보존은 특정 파일 포맷에 대해 사용성과 가독성 유지를 확고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신뢰성 등은 생산, 접속, 등록, 배포 등의 어느 시점부터 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삭제와 유지

어느 경우에 삭제할 것인가 메타데이터도 삭제할 것인가 그리고 리포지터리를 폐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법적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거나 국가 기밀 또는 거짓된 연구 등이 포함된 경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탁자가 요청한 경우에 삭제할 것인가 삭제한다면 완전히 삭제할 것인가 이용자가 볼 수 없게만 할 것인가 메타데이터는 유지할 것인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리포지터리를 폐쇄할 경우에 적당한 다른 곳으로 이관할 것인지 데이터를 제공자에게 돌려 줄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빅 데이터 열풍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빅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가능성과 관련 기술 개발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9년에 연구개발의 제4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집약의 과학적 발견에 관한 보고서¹⁸⁾가 나왔으며 국제기구로 CODATA¹⁹⁾가 1969년에 국제과학연맹 산하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별 국내외에서 다양한 리포지터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권리와 보호 방법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과학데이터의 권리 보호 문제는 EU에서 시작된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한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권리 체계하에서 여기서 제시하는 고려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리포지터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과학데이터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승진, 신재민 (2008),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4), pp.67-96
- Committee on the Fundamentals of Computer Science (2004):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s Board,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Computer Science: Reflections on the Field, Reflections from the Field”,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www.nap.edu/catalog/11106.html>
- Strategies for Preservation of and Open Access to Scientific Data in China (2006): Summary of a Workshop,

18) Tony Hey, Stewart Tansley, and Kristin Tolle, “THE Fourth Paradigm – Data Intensive Scientific Discovery”, Microsoft Research, 2009

19) www.codata.org

- p1, (<http://www.nap.edu/catalog/11710.html>)
- Geoffroy Hautier 등 (2011), “Data mined ionic substitutions for the discovery of new compounds”, *Inorganic Chemistry*, 50, pp.656-663
- Anne Fitzgerald 등 (2008), “Practical Data Management: a Legal and Policy Guide”, QUT
- Roger Elliot (2005), “Who owns scientific data?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scientific publication chain”, *Learned Publishing*, 18(2), pp.91-94
- Centre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CIER) (2011), “The legal status of research data in the Knowledge Exchange partner countries”, The Netherlands
- Tony Hey, Stewart Tansley, and Kristin Tolle (2009), “THE Fourth Paradigm - Data Intensive Scientific Discovery”, Microsoft Research
- Ann Green, Stuart Macdonald, Robin Rice (2009), *Policy-making for Research Data in Repositories: A Guide version 1.2*, Data Information Specialists Committee-UK

〈리포지터리 계약서안〉

이 계약서안은 호주의 퀸즈랜드기술대학이 발행한 “Practical Data Management: a Legal and Policy Guide”(http://www.e-research.law.qut.edu.au)의 부록(A)으로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과학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시 참고가 될 것이다.

[대괄호는 대체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보가 삽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샘플 계약에 사용하였다. 필요한 정보는 삽입하고 옵션은 적절하게 선택 또는 삭제해야한다.]

이 계약은 [Name of repository] (“이하 수탁자”)와 [Name of person depositing material into repository] (“이하 위탁자”) 간에 체결된다.

상세 설명

- A. 위탁자(depositor)는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위탁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이거나 이 계약으로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데이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저작권 소유자가 인증한 자이다.
 - B. 수탁자(repository)는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다른 사람(이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에 동의한다.
 - C. 수탁자는 데이터에 대하여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접속과 보기가 가능하게 하고 리포지터리 배포계약(최종 이용자)에 의해 허용된 추가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동의한다.
 - D. 이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데이터를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자가 데이터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E. 데이터의 저작권 소유자는 다른 사이트와 매체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1. 해석 : 최종 사용자는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수탁자가 제공하는 아이템에 액세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이템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여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하고, 이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은 이 RDL (repository deposit licence)를 의미한다. 리포지터리 배포(최종 사용자) 계약은 이 계약의 제11(2)조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된 계약을 의미한다.
 2. 계약 기간 : 이 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한 시점에 시작해서 저작권의 기간 동안 또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3. 위탁자 정의 : 위탁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 (2) 이 계약이 부여하는 권한을 수탁자(Repository)와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할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자이다.

4. 위탁자의 표시 및 보증

- (1) 위탁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고 보증한다.
 - (a) 위탁자는 아이템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또는
 - (b) 그 아이템이 위탁자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하고 있다면 위탁자는
 - (i)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모든 필요한 권한을 획득해서
 - 1. 아이템에 그 자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 2. 수탁자에 그 아이템을 제공하며
 - 3. 이 계약이 주는 권리를 수탁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 (ii) 그 아이템의 콘텐츠 또는 메타 데이터 내에 모든 제3자 소유 저작권 자료를 명확히 인지하고 공지해야 한다.
- (2) 위탁자는 아이템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으며 불법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 (3) 위탁자는 이 계약하에서 그 의무가 있는 위탁자에 의한 이 계약의 집행이 위탁자가 참여하거나 주관이 된 계약을 위반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 (4) 아이템이 수탁자 이외의 기관이나 조직이 후원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가 그 기관과의 계약 또는 합의하에 위탁자의 요구 검토 또는 기타 의무를 완수했음을 표시한다.

5. 저작권

- (1) 디지털 리포지토리를 통해 아이템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탁자를 고려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다음의 목적으로 아이템을 복제, 개작, 게시, 전송,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 (a) 최종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그 아이템을
 - (i) 액세스하여 그 아이템을 확인하고,
 - (ii) 제 11(2)조에 규정된 수탁자 배포(최종 사용자) 계약(repository distribution agreement)의 조건에 따라 허용된 아이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b)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기술적 조각이나 조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그 아이템을 수정하는 행위
 - (c) 백업 및 보존, 보안용으로 수탁자가 사용하기 위해 아이템의 복사본을 만들고 유지하는 행위

6. 위탁자의 권리

- (1) 위탁자는 다른 방법, 사이트 및 매체에서 그 아이템 및 이후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2)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는 이 계약 체결 및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아이템을 위탁함으로써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아이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7. 수탁자의 보증 및 의무

- (1)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템을 변경 또는 처리하지 않는다.

8. 수탁자 책임의 한계

- (1) 수탁자는 아이템 내의 어떠한 실수, 누락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아이템의

위탁자를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9. 제삼자에게 위탁자의 권리 양도

(1) 위탁자는 [제 9 조 (2), 9 (3)에 의거] 이 계약 하에 아이টে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제 3 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되면 위탁자는 양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양수인과 접촉을 돕기 위해 상세한 연락처 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다음 근거로 위탁자는 제 3 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가 이 계약이 계속 유효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 제 3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a) 위탁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자이며,
- (b) 이 계약의 운영을 부단히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

10. 종료

(1) 수탁자(Repository)는 즉시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다음 중 하나가 발생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a) 아이টে이 다른 사람에 의한 사기나 기만적인 행위의 결과로 위조 또는 제작된 내용 포함하거나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b) 아이টে이 제 3 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c)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명예 훼손, 모욕, 기밀 또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 (d) 위탁자가 저작권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 계약 하에서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위탁하려는 아이테의 저작권의 소유자의 허락을 획득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경우

(2) 수탁자(Repository)는 위탁자의 수요가 있을시 즉시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아이테를 제거한다.

(3) 수탁자는 이 계약의 종료 7일 이내에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아이테를 제거한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는 유지하며, 수탁자는 복사본을 보관(archive)하나 공개적으로 접속하게 할 수 없다.

[(4) 이 아이테의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제 9 조 (3)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

11. 리포지터리 배포 (최종 사용자) 계약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디지털 리포지터리를 볼 목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접속하게 할 권한을 부여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2.5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게 할 권한을 부여한다.

(2) 수탁자(Repository)는 제 11 (2)조 하에서 위탁자가 선택한 리포지터리 배포 (최종 사용자) 계약의 조건을 포함하여 이 계약의 조건이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접속하는 최종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법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도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개인 연구나 학습을 위한 정당한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도 포함된다.

12. 준거법

이 계약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13. 위탁자의 배상 : 위탁자는 이 계약 하에서의 의무, 표시, 보증 등에 대한 위탁자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수탁자에게 배상한다.